#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2201 제안년월일 : 2021년 3월 3일 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제정안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경제 기본계획과
 연계된 '연단위 시행계획 수립·시행과 의회 보고 사항'을 신설하고, 일부 법체계와 표현상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함 (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- 나. 일부 오기 및 자구 수정(안 제3조, 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, 안 제13조).

##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- 안 제4조의 제목 "(기본계획 수립·시행)"을 "(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 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안 제7조의2 및 안 제7조의3을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.
- 안 제10조(종전의 안 제8조)제1항 중 "제7조의2제1항, 제7조의3제1항"을 "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.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,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안 제11조(종전의 안 제9조)제2항제1호 중 "기본계획"을 "기본계획 및 시행계획"으로 한다.
- 안 제13조(종전의 안 제11조) 중 "범위 내"를 "범위"로 한다.

# 〈수정안 조문대비표〉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<u>①</u> (생 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(제정안 제1항 과 같음)
제4조 <u>(기본계획 수립·시행)</u> ① ·②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 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제정안과 같음)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획및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u>제7조의2</u> · <u>제7조의3</u> (생 략)	제8조·제9조 (제정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과 같음)
제8조(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) ① 제7조의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(이하 "전체회의"라 한다) 와 제7조의2제1항, 제7조의3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(이하 "소회의"라 한다)로 구분한다. <신 설>	제10조(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) ①

-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소회 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, 구성위원 전원의 출 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(생략)
- 제9조(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 제11조(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능) ① (생 략)
  -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
  - 2. ~ 4. (생 략)

제10조 (생 략)

제11조(예산지원) 시장은 실태조 사, 공정거래지원센터, 분쟁조정 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<u>범위 내</u>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 (생략)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, 구성위원 전 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 성으로 의결한다.

④ (제정안과 같음)

기능) ① (제정안과 같음)

2	 	 	 	 

- 1. <u>기본계획 및 시</u>행계획-----
- 2. ~ 4. (제정안과 같음)

제12조 (제정안 제10조와 같음)

제	1	3	3	<u>_</u>	( (	계	í	上	ス	1	운	1)	)	_	_	_	_	_	_	_	_	_	_	_	_
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
<u>범위</u>		<u> 범위</u>
-----------	--	------------

**제14조** (제정안 제12조와 같음)

##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경제 주체간의 갈등해소, 경제적· 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 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공정경제"란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 보호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불공정거래행위"란 경제주체 간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
- 2.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
- 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
- 4. 공정경제 관련 조사 · 연구 및 교육상담
- 5.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시행계획(이하 "시 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경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  - 1.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상담
  - 2.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
  - 3.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에 대한 홍보·교육
  - 4. 그 밖에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
- 제7조(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) 시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.

- 1.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
- 2.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
- 제8조(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) 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.
  - 1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
  - 2.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
  - 3.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
  - ②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 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.
  -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9조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.
  - ④ 이 밖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, 조직,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6조부터 제25조에 따른다.
- 제9조(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) ①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.
  - 1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
  - 2.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
  - 3.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
  - ②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5조부

- 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.
-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.
- ④ 이 밖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, 조직,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3조부터 제22조에 따른다.
- 제10조(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) ① 제7조의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(이하 "전체회의"라 한다)와 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(이하 "소회의"라 한다)로 구분한다.
  -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,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각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공정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(이하 "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경제 민주화 기본 조례」제6조의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
    - 2.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

- 3.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·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
- 4.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실행을 위해 관계기 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3조(예산지원) 시장은 실태조사, 공정거래지원센터, 분쟁조정협 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